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3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“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
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“금융감독원장”이라 한다)은 그 소속직원으로
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· 자산관리회사 · 자산보관회사 또는 일
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”고 규
정되어 있는데, 「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」은 「금융위원회
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
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이에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「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
법률」을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함으로써 국
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5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 중 “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금융위원회
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3조(감독 및 검사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</u>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“금융감독원장”이라 한다)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·자산 관리회사·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53조(감독 및 검사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